

## 독일의 취약계층지원 재원에 대한 정부의 세제 및 재정지원제도

정보신청기관 : 대한적십자사

### I. 개요

독일은 일반적인 성격의 사회보험을 처음 도입(1880년대)한 나라,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사회복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유명하다. 특히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회국가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다양한 사회보장/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재원은 국가와 각 주에서 관할하게 되는 일반세금과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복지)공과금(Sozialabgaben)으로 마련되고 있다.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조세법(Steuerrecht)의 영역에 속하며, 사회(보장/복지)공과금에 관한 내용은 사회법(Sozialgesetzesbuch)에 속한다. 사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회보험은 1) 의료보험, 2) 요양보험, 3) 실업보험, 4) 연금보험의 4가지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국가는 국민의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회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업무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위임 받아 실천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사회국가원리로부터 독일은 사회보험을 통해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본 보고서를 시작하기에 앞서 확인해야 할 개념이 있는데, 과연 누가 취약계층인가 하는 점이다. 취약계층이라는 표현은 사회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취약계층”이란 경제적 측면에서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빈곤층과 저소득층<sup>1)</sup>을 의미하고, 질병이나 재해로 건강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계층으로 의료이용의 경제적, 지리적, 문화적 접근도가 떨어지고 건강으로 복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영구적인 장애 혹은 사망에 이르는 가능성이 높



1)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그 내용에 따라 상이하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이 될 것이다.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은 사회법전 제2장에서 규율하고 있다.

은 집단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를 내리더라도 취약계층의 기준은 소득수준, 생애주기, 위험요인의 노출정도, 성별, 생활조건 등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이 결정된다(Ahn, 2007).

위와 같은 정의로 볼 때, 취약계층의 지원은 세금을 통한 연방차원에서 지원과 독일의 각각의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부조(Sozialhilfe)법을 근거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된다. 첫째, 조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와 사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 둘째, 기부금에 관한 각각의 세제혜택 부분이다. 이 중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에 관해서는 사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기부금과 관련한 조세법적 혜택에 관해서는 조세법의 각 조문에 의하였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재원 확보는 예산법에 의하며, 조세 중 얼마를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확보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매년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예산법의 내용은 배제하기로 한다. 다만, 예산법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사하기로 한다. 조사된 내용 중 특히, 사회보

험을 통한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재정마련에 필요한 재정지원 제도에 관해서는 독일의 아젠다(Agenda) 2010<sup>2)</sup>과 Hartz IV<sup>3)</sup>의 사회개혁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 II. 본문

본문에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독일의 조세법적, 사회법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히 기부금과 독일 적십자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기로 한다.

독일은 일년에 약 3억유로에서 5억유로의 기부가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이는 1인당 36유로 내지 60유로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이러한 기부금액은 60만 개의 공익단체와 1만 5,000천 개의 재단에 기부되어진다. 기부의 많은 부분은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개인은 다시금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사람으로 구분된다. 독일 사회문제를 위한 중앙기구(Deutsche Zentralinstitut für soziale Fragen(DZI))에서 이를 관리하고 정보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한 연구에 의하면, 독일은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에 속하



- 2) 아젠다 2010은 독일 사회보장체제와 노동시장의 개혁을 위한 개념이다. 아젠다 2010의 개념은 유럽에 영향을 주었는데, 2000년에 포르투갈에서 유럽 국가와 유럽 정부 지도자들이 리사본-전략(Lissabon-Agenda)에 따라 유럽연합이 2010년까지 “경쟁능력이 있고 결정적으로 학문적 기반이 되는 세계의 경제성장(wettbewerbsfähigsten und dynamischsten wissensbasierten Wirtschaftsraum der Welt)”을 주도적으로 만들기로 결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젠다 2010의 내용은 혁신, 지식사회와 사회적 결합을 위한 요구를 겨냥한 리사본-전략으로만 제한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 3) 하르트츠(Hartz)는 “노동시장에서의 근대화 서비스업”에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 조직한 위원회의 명칭이다. 위원회는 Peter Hartz가 위원장으로서 독일에서 개최되었고, 2002년 8월 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사회법이 수정되었고, 그때 제출된 보고서의 한 부분이 Hartz-IV이고, 이를 애칭으로 부르고 있다.

# 맞춤형 법제정보

며, 높은 수입을 가진 사람이 평균수입을 가진 사람보다 분명하게 더 자주 기부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독일에서는 기부를 하는 경우에 조세법적으로 어떠한 혜택이 주어질까? 이하에서는 세법을 근거로 하여 개인 및 법인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의 범위 및 비영리기관을 포함하는 공동모금회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1. 조세법

독일의 세금제도는 복잡하기로 유명하다. 그 이유는 소득에 따른 세금의 격차가 크며, 이에 대한 예외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기부금과 세금지원에 관한 내용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조세법 자체에서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독일 조세법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세금지원혜택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현하고 있다. 일단 세금적용의 범위를 납세자의 제반 조건에

따라 6개의 등급<sup>4)</sup>으로 나누고, 소득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이 경우, 수입이 2010년 기준으로 1년에 8,004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부과에서 배제된다(소득세법 제49조, 표 1 참조). 이 수입의 하한선은 매년 다르게 조정된다.<sup>5)</sup> 구체적으로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공과금규정 제8조에 의해 국내에 주거지(Wohnsitz)가 없는 경우, 공과금법 제9조의 일반 거주지(Aufenthalt)가 없는 경우 등의 조건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부분은 면세가 되고 있고(소득세법 제32조), 아이지원금(Kindergeld)은 매달 세금지원으로서 지불된다(소득세법 제31조).<sup>6)</sup> 이러한 면세제도가 조세법적으로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조세제도라고 보여진다.

<표1> 2010년 소득세에 대한 면세와 세율기준

세율(%)	0%	14%	누진 적용	42%	45%
소득 기준 (유로)	0-8,004 유로	8,005-13,469 유로	13,470-52,881 유로	52,882-250,730 유로	250,731 유로 부터



- 4) 1 계급 분류기준: 1) 미혼, 2) 결혼한 경우에는 한 배우자가 제한적으로 조세의무가 있는 경우, 3) 결혼은 했으나, 떨어져 살거나 이혼한 경우, 4) 등록된 동거생활을 하는 자. 다만, 임금 제1계급이 조세분류 3이나 4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 받을 수 있는 아이의 수는 연말정산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계급 분류기준: 1계급의 분류기준에 속하지만,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에 해당된다.
  - 3 계급 분류기준: 결혼한 사람 중에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고, 계급 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4 계급 분류기준: 계급 4는 부부가 제한 없이 소득세납부의무가 있고,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게 되는 경우
  - 5 계급 분류기준: 5계급은 연말정산서에 소득세법 제38b조 제5항에서 따라, 부부가 다른 한 배우자를 계급 3에 속하게 하도록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는 배우자 간의 소득격차가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
  - 6 계급 분류기준: 나머지 부분에 해당한다. 이 계급은 가장 높은 세금 부담의 원인이 된다.
- 5) 예를 들어, 2009년에는 7,834유로였고, 2010년에는 8,004유로이다.
- 6) Volker Kref, Einkommensteuerrecht, 11판, 2009, 263쪽

## 2) 기부금에 대한 조세법적 지원

### (1) 소득세법

공공기관,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에 대한 기부금은 독일에서 조세법적으로 차감될 수 있다. 이러한 기부금은 개인이 특별지출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신고서에 기부 내용을 기재하고 소득 부분에서 기부금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소득세법 제10b조). 개인이 공익을 추구하는 법인(공법인)에 기부를 한 경우에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는 개인이 내야 하는 소득세의 비율에 따라 다르다. 기부를 받는 기관은 국내의 공법인, 공무원야 또는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제9호의 세금이 면세되는 법인, 협회 또는 재단이어야만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독일 적십자에 기부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정치적 정당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g조에 따라 그 액수와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sup>7)</sup> 또한 개인 기업은 이 기부금을 이윤의 최고액 범위 내에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0b조).<sup>8)</sup>

조세혜택의 목적을 위한 기부금은 총수입의 20%까지 특별지출로서 인정된다(소득세법 제10b조 제1항 제1문). 정당과 무소속 출마자에게 하는 기부금은 기부금의 50%를 조세감면 받게 되며, 그 한도는 1,650유로에 한한다. 정당이나 공익단체의 회원비도 기부금에 속하며, 기타 “여

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하는 스포츠, 고장배려와 같은 기부금도 소득세법 제10b조에 의해서 조세혜택을 받게 된다. 추가적으로 최근 인터넷에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체가 독일 세무서에 공익단체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법적인 의미에서의 “기부”로 인정받기보다는 “증여”로 본다.

### (2)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 제3항은 소득세법 제10b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서 말하는 기부금을 공제함에 있어서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근본적인 차이는 법인세법은 소득세법 제10b조 제1항 a에 해당하는 기부금에 대한 규정이나 소득세법 제10b조 제2항에 해당하는 정치적 정당에 대한 기부금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는 조세법적으로 정치적 정당에 대한 기부에 있어서 효력이 없다. 조세법적으로 공제될 수 있는 원칙적인 기부금과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회원비가 있는데, 이 또한 계약적으로 또는 법률적인 의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대급부가 있는, 반대급부적인 기부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법인에 의한 기부금 수혜자는 단지 공과금법 제51조 이하에 의한 조세



7) Volker Krefz, Einkommensteuerrecht, 11판, 2009, 253쪽

8) Rick, Gierschmann, Lehrbuch Einkommensteuer, 17판, 2011, 233쪽 이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이어야만 한다.<sup>9)</sup>

그 밖에 공동 모금으로 이루어진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없다. 왜냐하면 세금을 환급 받거나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인이 확정 되어야 하는데 공동 모금의 경우에는 이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도 기부금으로 인한 세제혜택은 없다. 왜냐하면, 법인으로서는 세금을 내는 주체는 “경제능력”을 가진 단체를 의미하므로(법인세법 제8조 제2항)<sup>10)</sup> 비영리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는 주체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2. 사회법

사회법전 제1장에서 일반원칙을, 제2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인 보장을, 제3장에서 일자리지원, 제4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일반 규정들, 제5장에서 공 의료보험, 제6장 연금보험, 제7장 사고보험, 제8장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보조, 제9장 장애인의 재활과 공유생활, 제10장 행정절차와 개인정보보호, 제11장 사회 요양보험, 제12장 사회보조와 같은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이는 독일이 헌법에서 명시한 사회(보장)국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사회보험은 그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 의료보험의 경

우에는 수혜자가 납부하는 50%와 직장에서 납부하는 50%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보험의 성격에 따라 다르며, 각각 의료보험금, 실업보험금, 연금보험금, 요양보험금 등의 보험금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위한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실업급여라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제도를 포함하여 기타 독일의 사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 1) 사회법전 제2장(Sozialgesetzbuch II)

실업급여 2(Das Arbeitslosengeld II)는 독일 사회법 제2장에 따른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기본보장적 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2005년 1월까지 노동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4번째 법률(Hartz IV)을 통해서 도입되었다. 실업보조와 사회보조(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의 관계를 보자면, 실업급여 2는 사회보조의 수준에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졌다. 과거(2005년 전) 사회보조는 명목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늘날의 실업급여 2보다 그 보장이 낮은 수준이었다.

실업급여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2006년 2월부터 최대 18개월로 축소되었다. 2007년 대연합의 결정에 따르면, 모든



9) Körperschaftsteuer, Gewerbesteuer, 제2판, C.H.Beck, 63쪽

10) Körperschaftsteuer, Gewerbesteuer, 제2판, C.H.Beck, 7쪽, 60쪽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진 경우에는, 58세가 넘는 경우에는 2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하기 전 마지막 달 수입의 백분율로 지급되는데, 12개월로 제한 또는 축소되었다. 이는 실업보험에서 불입한 기간에 무관하게 적용된다. 다만, 55세부터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18개월까지로 축소되어 적용된다(이전에는 32개월이었음). 2005년까지 존재했던 실업자보조는 폐지되었다.

실업급여 2는 실업급여 지급 개시 후에 사회복지액(Sozialhilfesatz)의 상한에 따라 실업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이 금액은 소위 말하는 빈곤과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실업급여 2의 지급은 자산이 정해진(최저)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 소위 말하는 필요적 수요(Bedarfsgemeinschaft)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이 세금을 제외하고 3명 가족을 기준으로 매달 1,200유로 정도로 높지 않을 때에만 보장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 2의 수혜자는 그들의 수입관계를 고려배려를 위한 적립금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포함한 수입의 범위 안에서 완전히 개방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축액으로써 보호받는 범위는 4,850유로까지이고, 이는 면세된다. 이러한 규정의 의의는 부모의 총 재산액이 공개되기 전에 이를 숨기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하여 면세액이 고려되는데, 연령에 따라 지급되는 150유로와 처음 연금개시에 의해 지급되는 고려배려(Altersvorsorge)에서 발생하는 추가 지

급되는 250유로를 합한 400유로를 개인재산에서 면세액으로서 차감하였을 때, 여전히 1,200유로의 상한선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금액 2로부터 어떠한 보조도 지급 받을 수 없다.

### 2) 공 의료보험(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공 의료보험의 현대화 개혁(Gesundheitsreform)으로 인하여 공 보험의 부담액이 수입의 약 13%로 내려가게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액에서 의료보험을 위해 차감되는 금액이 직접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보험으로 인한 혜택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으므로, 과연 취약계층을 위한 올바른 개선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치과나 가정의료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진료액이나 보험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10유로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 3) 공 연금보험(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연금보험금액이 세금을 포함한 임금의 19.5%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장기적인 여건들의 변화로 인하여 연금형태를 보완하고자 할 것이고, 이러한 연금형태의 보완을 위해서 연금 보험액이 상승하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러한 백분율을 유지하고자 한다. 연금보험이 직접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연금이 개시되는 시기와 실업수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

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연금보험이 노후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시기의 가정에게 노후보장에 관한 보험이 어떠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4) 사회법전 제12장(SGB XII)

독일 사회법전 제12장은 “사회보조/부조”라고 하여 실질적인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도움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다. 그 종류로는 첫째, 생활부양을 위한 도움으로서 사회문화적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안정을 위해서 사회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사회법전 제12장 제27조에서 제40조). 둘째, 노인들과 경제생활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 생활안정은 제41조에서 제4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나 18세에서 65세 이하의 경제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완전히 소수계층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다. 셋째, 제47조에서 제52조에서는 예방적 건강조치, 건강상의 도움, 가족계획을 위한 도움, 특히 임신부와 모자보호에 관한 도움, 불임에 있어서의 도움 등이 규율되어 있다. 넷째, 장애인을 위한 적응도움 등은 제53조에서 제6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섯째, 요양에 관한 도움은 제61조에서 제66조에서 다루고 있다. 여섯째, 특히 사회적인 어려움을 극복을 위한 조치들은 제67조에서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생활조건들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들은 제70조에서 제74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는 맹인도움, 노인도움, 장례비용 등 부수적인 생활에서의 도움 등이 기록되어 있다. 사회법전 제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외에도 법의 목적에 비추어 제공되는 후견과 보호가 존재한다.

##### (1) 생계비

제27조에 따르면, 생계비란 의식주 이외에도 신체를 보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상담비, 난방비와 하루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개인의 기본 충족을 위한 비용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한 비용도 포함된다. 이는 사회복지(Sozialhilfe)라는 것이 단순히 신체적인 최소한의 존재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법전 제12장의 11절을 보면, 사회복지수가 명시되어 있고, 수입과 재산이 평가되어 있는데, 생계비를 위한 도움은 우선적으로 생활비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계비를 지원하고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을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 (2) 노인과 취업에서 소외된 경우에 있어서의 보장

18세에서 64세 이하의 완전히 경제생활에 있어서 소외된 사람들과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 숨겨진 빈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입법자는 사회문화적 최소생계의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급부

를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매년 부양해야 하는 어린이와 부모의 수입이 10만 유로 이하인 경우에 이러한 보장이 신청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사회법전 제12장 제18조). 다만, 이 경우 생활비에 대한 청구권은 고려되지 않는다.

### (3) 건강을 위한 복지

사회법전 제12장에 의한 급부를 받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에서의 의무보험자가 아니다. 이러한 의무보험자가 아닌 경우에, 자율적으로 의료와 요양보험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적 분담금이 고려된다(사회법전 제12장 제32조). 2004년 1월 이후로 의무 의료보험자가 아닌 사람도 사회법전 제12장 제5절에 의하면 급부가 의료보험에 의해서 적용되며, 의료보험은 법률상, 약관에 의한 급부를 일반 보험자와 마찬가지로의 보호관계의 범위 내에서 이행해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사회보호청(Sozialamt)에서 지급한다(사회법전 제5장 제264조).

### (4) 장애인의 적응을 위한 도움조치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장애인이 속함은 분명하다. 이에 사회법전 제12장의 내용 중 장애인의 적응을 위한 복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장애인의 적응을 위한 복지의 내용은 위협적인 장애를 예방하거나 장애나 장애로 인한 결과들을 제거해야만 하거나 약화시키고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장애에는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도 본질적인 장애로 인정하며, 이러한 적응을 위한 보호의 영

역에서는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이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의 사회의 적응을 위한 급부에 있어서 소득이나 재산 여부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제12장 제92조와 제 57조에서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한 평가가 규정되어 있다. 개인 예산의 일부분으로 적응을 위한 급부가 수행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바, 이렇게 개인 예산으로 수혜자가 원하는 급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인은 각각의 유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 (5) 요양복지

사회복지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요양이 필수적인 경우에 있어서 요양과 관련된 비용을 소화하고 있다. 요양보험으로부터 해결되지 못하는 시설에서의 숙박시설에 관한 재정문제는 사회법전 제12장의 제42조 제2호와 제29조가 결합되어 해결되고, 요양시설에서의 생활비는 제35조에 의해서 해결된다. 기본보장과 생계비를 위한 보호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나 기본보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위한 보호의 영역에서 위임 받게 된다.

## 3. 독일 적십자사

### 1) 독일 적십자사에 대한 조세 지원제도

독일 적십자는 공익을 위한 단체로 등록된 협회이다. 독일 적십자사는 독일의 여러 복지사업 단체들 중 하나이며, 건강에 관한 그리고 윤리적



인 위해나 긴급상황에서 사회의 안녕과 개인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 중 가장 상위에 있는 기관이다. 또한 독일 사회문제를 위한 중앙기구<sup>11)</sup>의 기부금-인증<sup>12)</sup>과 함께 기부금을 절약하고, 이를 약관에 따라 사용하는 기관으로 인정된다. 독일 적십자의 업무와 관련한 세부항목들은 모든 공익기관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면세된다.

## 2) 독일 적십자사에 대한 조세 외 지원제도

독일 적십자사의 업무는 3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정신적인 영역에서 수행되고, 11만 명의 직원들과 함께 재정적인 영역에서 업무가 제공된다. 독일 적십자의 연방제적 건설을 통해서 모든 520개의 지역단체와 주단체, 그리고 연방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약관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상위 기관의 특별한 제재와 특별한 영역에서의 간섭이 가능하다. 이처럼 구체적인 재정에 관한 부분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요한 재정상 금액을 한눈에 모두 볼 수 있는 총괄된 결산금액은 없다.

한 가지 독일 적십자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특이한 점은 앞에서 살펴본 사회법전에서 보장하

고 있는 여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가 적십자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십자의 활동은 기여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에는 기부금, 보조금, 공적 기부금 또는 국가의 보조금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보조금은 의료보험, 요양보험으로부터 나오고, 적십자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직접 이를 지불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연방, 주, 각 자치단체에서 지불한다. 이때, 모든 개인과 공익을 위한 제공자에게 같은 규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그 외에,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특별한 조치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권의 기여금으로부터 충당될 수 있다.

## III.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은 크게 세금과 사회보험금의 두 가지 방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이때, 독일 세법의 경우 특별히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나, “취약계층” 자체에 대한 세금감면이 실시되고 있다. 그 밖의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과 실질적 생



- 11) 독일 사회문제를 위한 중앙기구는 독립적 기구로서, 사회와 자선을 위한 무정부기구로서, 독일에서 자선금의 사용을 검사한다.
- 12) 독일사회문제를 위한 중앙기구는 1991년 11월부터 사회의 자선단체로서, 기부금의 인증을 신청하고 기준을 이행하였는지를 검사한다. 검사 내용은 기부금을 적정하게 잘 사용하였는지, 약관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검토함으로써 심사 받은 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

활지원은 사회법전 제2장과 제12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기부금에 의한 세제혜택은 소득에서 기부금액을 제외하고 세금적용을 받는 것이다. 독일적십자사에 관한 세제혜택 부분들에 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며,

독일 적십자사가 비영리기관이므로 이를 준용하기로 한다.

### 이 지 희

(해외입법조사원, 독일 슈파이어 행정대학원)